

#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

## (2026년 제3회)

1. 안 건 명	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841-11,12번지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			
2. 심의개요	심의일시	26. 4. 23. ~ 4. 27.	심의장소	서면심의
	신청자	(주)와이엠	참석위원	5명
3. 조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크레인 검토결과 수평하중 중 주행방향 하중과 주행직각방향 하중이 기준과 반대로 입력 설계되어있으며, 주행직각방향 하중이 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어 있음[기준(KDS 41 12 00) : 주행직각방향 20%, 주행방향 10%], 수정하여 설계 및 착공 전 제출바람.</li> <li>- 크레인 수평하중을 크레인 브라켓(주행빔)이 아닌 기둥지점에 가력한 근거를 착공 전 제출하거나 수정하기 바람</li> <li>- 윈드빔 방향 구조계산서(도면)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 바람</li> <li>- 구조계산서 내 Rod Bar Brace의 경우 SS275강재로 사용이 적절 (SHN강재는 H형강, ㄱ형강, ㄷ형강으로 사용)하여, 해당부분을 SS275강재로 변경을 요함.</li> <li>- 사전검토의견 조치사항은 착공 전 설계도서에 수록하여 현장시공에 반영되어야 하며, 건축심의 조치계획서 및 변경된 설계도서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 추후 현장 점검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</li> </ul>			
4. 심의결과	[ 조건부의결 ]			

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

2026년 4월 30일

##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